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명인 등 지정계획 공고

제주향토음식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와 분야별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를 발굴하여 각각 제주향토음식 명인·장인 및 전수자으로 지정, 제주 향토음식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아래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명인 등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3조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기본계획」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시행계획」

□ 지정분야

* 조례 제2조(정의)

-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여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향토음식의 육성 발전에 공헌한 사람
-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향토음식 육성 발전에 공헌한 사람
- 전수자: 향토음식명인·장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으며, 향토음식명인·장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신청분야

- 명인: 향토음식 전반(별도 구분 없음)
- 장인: 향토음식 전반에 대하여 신청하되 지정분야별 구분 지원

【장인지정 분야】

- ① 음식류 ② 장류 ③ 떡(한과)류 ④ 음료(차)류
- ⑤ 발효식품류 ⑥ 주류 ⑦ 당류가공품류 ⑧ 기타

* 기타 분야 신청에 대하여는 심사 시 분야 결정하여 추가 분류

- 전수자: 추천인(명인·장인)의 지정분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10. 1.(목) ~ 10. 2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방문 및 등기우편 (☎ 064-710-3174)
- 제출서류

<향토음식명인·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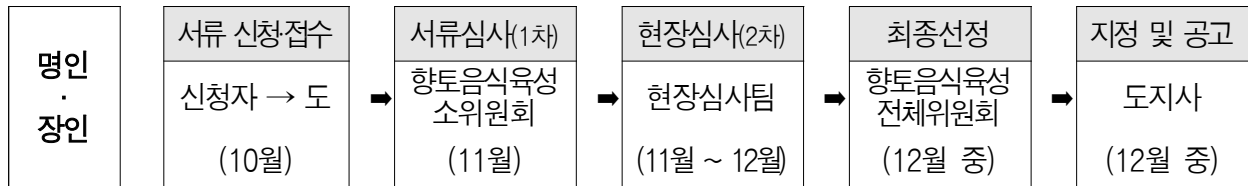
- ① (서식1)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 신청서 1부
 - ② 보유기능 및 음식의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 ③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 ④ [참고]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의한 증빙서류* 각 1부
- * 보유 기능에 대한 동영상 촬영물 등 관련 증빙자료
- ⑤ (서식3)개인정보처리동의서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 ① (서식2)향토음식명인(장인) 전수자 추천서 1부
- ② 전수자 교육계획 1부
- ③ 향토음식명인(장인) 전수자 경력증명서 1부
- ④ 향토음식명인(장인) 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 ⑤ (서식3)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지정절차

<향토음식명인·장인>



○ 신청서 접수: 신청자 → 도

○ 서류심사(1차): 소위원회 심사

- 심사반: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운영(위원 5인 이내)
- 내 용: 신청자 대상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 대상 선정

○ 현장심사(2차): 별도 심사팀 구성(심사대상 인원 확정 후 3개팀 내외 구성)

- 심사반: 향토음식육성위원회 현장심사팀 구성(위원 5명 이내)
- 내 용: 현장심사 대상 방문, 조리과정·제주산 식재료 사용여부 등 제반사항 심사

○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전체회의: 최종예정자 선정

- 참 석: 2차 현장심사 대상자
- 내 용: 의견발표 및 질의응답, 종합심사 후 최종예정자 선정

○ 향토음식명인 등 지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심사방법

- 향토음식명인 등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별표2, 별표2의2)에 의한 심사
- 평가기준: 6~7개 항목(배점) + 가감점 항목 각 1개
 - 명인: 향토성(10), 전통성(30), 조리법(20), 가치성(15), 윤리성(10), 대외인지도(5), 경력(10)/ 기능 보유자 및 학력 등 가점(10), 법령위반 감점(-20)
 - 장인: 향토성(20), 조리법(30), 가치성(25), 윤리성(10), 경력 및 활동사항(10), 대외인지도(5)/ 수상경력 및 봉사활동 등 가점(10), 법령위반 감점(-20)

* 총점 80점 이상이고, 심사항목별 득점비율이 60%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정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전수자	서류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최종선정	지정 및 공고
	명인·장인 → 도 (10월)		향토음식육성 소위원회 (11월)		향토음식육성 전체위원회 (12월 중)	

○ 추천서 접수: 향토음식명인·장인 → 도

※ 전수자 추천방법

○ 향토음식명인(장인)이 추천서(별지 제1호의2)를 제출

*** 추천서 제출 시 첨부서류: 전수자 교육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검토기준) 국내외 식품제조업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식품제조·가공·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에의 종사 여부와 나이, 기능 보유 정도,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 서류심사: 소위원회 심사

- 심사반: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운영(위원 5인 이내)

- 내 용: 신청자 대상 적격여부 검토 심사

○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전체회의: 최종예정자 선정

- 참 석: 전수자 추천 대상자

- 내 용: 종합심사 후 최종예정자 선정

○ 향토음식명인 등 지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함

○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서식1

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주소					
	E-mail				연락처 : 핸드폰 :	
	해당분야 경 력					

기능 보유 내용	신청분야	☐ 향토음식 명인 ☐ 향토음식 장인			
	음식유형		음식명		
	보유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보유기능 및 음식의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별표 2〕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의한 증빙서류 각 1부

향토음식명인(장인) 전수자 추천서

향토음식명인(장인) 전수자 추천서

향토음식명인(장인) 전수자 추천서					
추천인	성명		생년월일		명인(장인) 지정번호
	주소				성별
	지정분야(보유기능)				
	E-mail				연락처 : 핸드폰 :
추천전수자	전수분야	〔 〕 향토음식 명인 〔 〕 향토음식 장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음식유형		음식명		
	직업		연락처 : 핸드폰 :		
	E-mail				
	관련분야 종사기간		보유기능		
추천사유		※ 추천인의 지정분야 및 보유기능만 전수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사람을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로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전수자 교육계획 1부 2.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경력증명서 1부 3. 향토음식명인(장인)전수자 재직증명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향토음식명인 및 장인 지정」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향토음식명인 및 장인 지정」 신청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상경력 등
나. 개인정보 수집목적 : 향토음식명인 및 장인 지정 신청에 따른 확인 등
다. 개인정보 수집방법 : 향토음식명인 및 장인 지정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가.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향토음식 명인 및 장인 지정 기간 동안 보유·이용합니다.
나. 향토음식명인 및 장인 지정절차에 따라 향토음식육성위원회에 등 정보가 제공됩니다.
다. 향토음식명인 및 장인으로 지정될 시 향토음식관련 기관(단체)등 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향토음식명인 및 장인 지정 신청서」가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참고

향토음식명인 등 지정 심사기준 등

【참고1】 [별표2] <개정 2022.1.12.>

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제3조제7항 관련)

분야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득점	비고
1. 향토성 (10점)	기능(기술) 보유자의 음식에 제주 향토 식재료(local food)를 얼마나 사용하는 지에 대한 여부	제주 향토 식재료 90% 이상 사용	10		
		제주 향토 식재료 70%이상 ~89% 이하 사용	8		
		제주 향토 식재료 60%이상 ~ 69% 이하 사용	6		
		제주 향토 식재료 60%미만 사용	3		
2. 전통성 (30점)	기능(기술)이 제주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대표하는 지에 대한 여부	기능(기술)이 제주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대표하는 지와 표현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	30		
3. 조리법 (20점)	기능(기술)이 제주 고유의 전통 조리법을 대표(반영)하는 지에 대한 여부	기능(기술)이 제주 고유의 전통 조리법을 대표하는 지와 고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	20		
4. 가치성 (15점)	기능(기술)으로 만든 음식이 제주 향토음식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한 여부	해당 기능·기술을 습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15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0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5		
5. 윤리성 (10)	향토음식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	명인으로서의 마인드와 사명감, 비전 및 활동계획	10		
6. 대외 인지도 (5점)	기능(기술) 보유(음식)의 대중 인지도 여부(10점)	전국방송 출연 및 소개(1회 2점), 지역지상파 방송 출연 및 소개(1회 1점), 신문기사 및 관련 잡지 소개 및 기고(1회 1점)	5		-합산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7. 경력 (10점)	관련 분야 근무 경력 (10점)	근무경력 30년 이상	10		
		근무경력 25년 이상	7		
		근무경력 20년 이상	3		
8. 가정 (10점)	기능(기술) 보유자 전문성 및 학·경력 (10점)	기능장(10점), 산업기사(5점), 기능사(3점) (기술사, 기사, 기능사 동일)	10		- 합산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박사학위(10점), 석사학위(7점), 학사학위(5점), 전문학사(2점)			
		제주향토음식 관련된 논문 (10점), 제주향토음식 관련된 저서 (7점) 제주향토음식 관련된 특허 (5점)			

분야	심사항목	채점 기준	배점	득점	비고
	각종 요리경연대회 수상 경력 (10점)	요리경연대회 관련 대통령상(10점), 국무총리상(8점), 장관급(7점), 광역단체장(6점), 지방단체장(5점)	10		-중복수상자는 높은 점수로 산출 -수상의 금 1 위, 은 2위, 동 3위로 규 정함.
		제주향토음식관련대회 수상 (금 8점, 은 6점, 동 5점)			
		국제요리경연대회 (금 8점, 은 6점, 동 5점)			
		전국요리경연대회 (금 8점, 은 6점, 동 5점)			
	지역사회봉사활동 관련수상 (10점)	대통령상(10점), 국무총리상 (8점). 장관급상 (5점), 도지사상 (3점), 시장상 및 관련 단체장상 (2점)	10		-사회봉사 활 동시간 별 차 등 점수부여
		사회봉사 활동 시간에 따른 평가 (10점) * 최근 3년간 실적 100시간 기준			
9. 감점 (20점)	「식품위생법」 또 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 한 법률」 위반 여 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20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계					
종합의견					

- * 총점 80점 이상이고, 심사 항목별 (향토성, 전통성, 조리법, 가치성, 윤리성) 득점비율이 60% 이상인 자를 “제주향토음식 명인”으로 선정한다.
- * 가점은 가점항목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별도 결정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성 명

(인)

향토음식장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제3조제7항 관련)

분야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득점	비고
1. 향토성 (20점)	기능(기술) 보유자의 음식에 제주 향토 식재료(local food) 를 얼마나 사용하는 지에 대한 여부	제주 향토 식재료 90% 이상	20		
		제주 향토 식재료 70% 이상	15		
		제주 향토 식재료 60%이상	10		
		제주 향토 식재료 60%미만 사용	5		
2. 조리법 (30점)	향토음식 원형 보존 가능 여부	제주향토음식을 원형 그대로 복원	30		
		제주향토음식을 원형 가깝게 복원	20		
		제주향토음식을 미흡하게 복원	10		
3. 가치성 (25점)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여부	해당 기능·기술을 습득하기가 매 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 우 높은 경우	25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0		
		해당 기능·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 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15		
4. 윤리성 (10)	향토음식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	장인으로서의 마인드와 사명감, 비전	10		
5. 경력및 활동사항 (10점)	해당분야 경력 및 활 동사항 (10점)	경력 및 활동실적이 30년 이상	10		
		경력 및 활동실적이 25년 이상	7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	5		
6. 대외 인지도 (5점)	기능(기술) 보유(음 식)의 대중 인지도 여부(5점)	전국방송 출연 및 소개(1회 2 점), 지역지상파 방송 출연 및 소개(1회 1점),신문기사 및 관련 잡지 소개 및 기고(1회 1점)	5		-합산하되 5 점을 초과할 수 없음.
7. 가점 (10점)	각종 요리경연대회 수상 경력 (10점)	요리경연대회 관련 대통령상(10점), 국무총리상(8점), 장관급(7점), 광역단체장(6점), 지방단체장(5점)	10		-합산하되 10 점을 초과할 수 없음. -중복수상자 는 높은 점 수로 산출 -수상의 금 1 위, 은 2위, 동 3위로 규 정함.
		제주향토음식관련대회 수상 (금 8점, 은 6점, 동 5점)			
		국제요리경연대회 (금 8점, 은 6점, 동 5점)			
		전국요리경연대회 (금 8점, 은 6점, 동 5점)			

분야	심사항목	채점 기준	배점	득점	비고
“	지역사회봉사활동 관련수상 (10점)	대통령상(10점), 국무총리상 (8점). 장관급상 (5점), 도지사상 (3점), 시장상 및 관련 단체장상 (2점) 사회봉사 활동 시간에 따른 평가 (10점) * 최근 3년간 실적 100시간 기준	10		-사회봉사 활 동시간 별 차 등 점수부여
9. 감점 (20점)	「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 한 법률」 위반 여 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		
계					
종합의견					

- * 총점 80점 이상이고, 심사 항목별 (향토성, 조리법, 가치성, 윤리성) 득점비율이 60% 이상인 자를 “제주향토음식 장인”으로 선정한다.
- * 가점은 가점항목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별도 결정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성 명

(인)